

# 펀드투자권유 전문인력 투자자보호

# Lesson

## 자본시장법 1

1. 포괄주의 규율체계 도입
2.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
3. 투자자 보호의 강화

# 학습이정표

## • • 학습목표

- 포괄주의 규율체계의 주요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기능별 규율체계의 주요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투자자보호의 강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

- 포괄주의 규율체계 도입
-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자본시장법 1

1

## 포괄주의 규율체계 도입

### 1. 종전 열거주의의 문제점

- 종전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종류를 법령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념을 정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법령에 열거된 상품만 취급이 가능하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규율 역시 그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새로운 금융상품을 설계하거나 이를 취급(매매, 증개 등의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전적으로 불확실하여 금융혁신을 제약
  - 법령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 발생

<대표적인 사례 : 소위 '네티즌 펀드'>

- 2004년 9월에 영화제작사 강제규&명필름이 영화“안녕, 형인”제작비 전액을 인터넷으로 모집한 소위 네티즌펀드임
  - 당시 익명조합 형태의 직접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자산운용법상 간접투자의 규제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당시 상법상 익명조합지분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명시되지 않아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증권거래법상 공모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자보호에 공백 발생

-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에는 이미 선진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융상품도 국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국내 금융회사가 이를 취급할 수 없고, 법령을 개정하여 해당 금융상품을 반영한 후에야 비로소 영업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이었음
  - 즉, 이전 증권거래법령에 추가로 열거된 주식워런트(ELW, 2002년), 주식연계증권(ELS, 2003년), 파생결합증권(2005년) 등이 그 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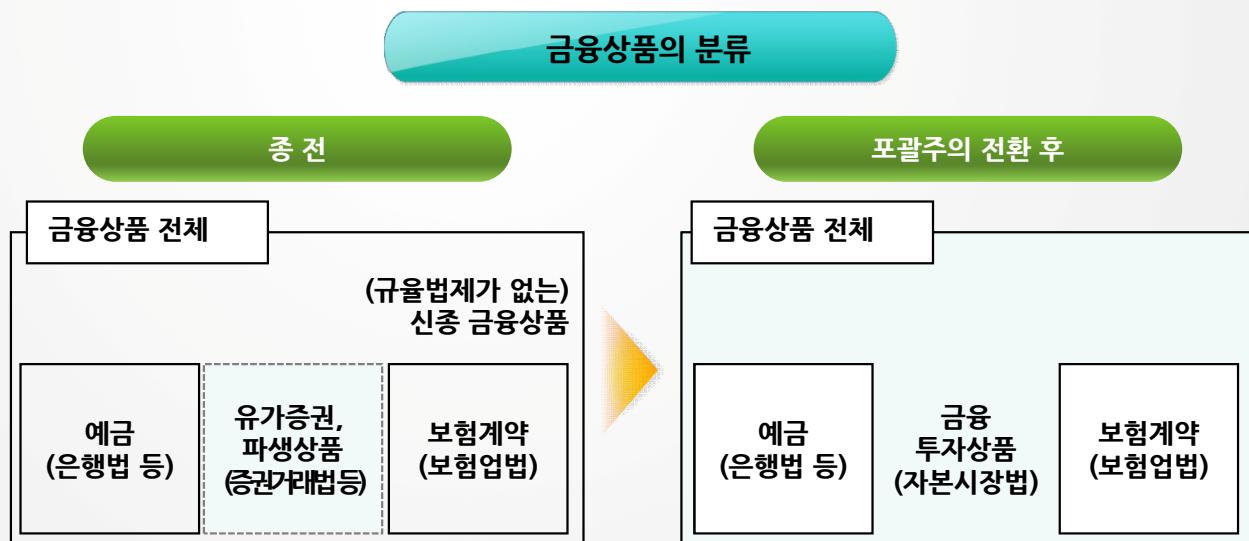
# 자본시장법 1

1

## 포괄주의 규율체계 도입

### 1.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 본시장법은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여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법령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여 금융회사가 즉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 관련 규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06.12.28. 7면 >

- 이같이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다시 증권, 장내외파생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다시 추상적으로 정의
  - 다만, 추상적 정의만으로 개념을 규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일부 금융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마지막에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예시적 열거주의를 채택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도 증권, 선물,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어음, 보험금지급청구권 등으로 열거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열거된 특정자산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자산운용방법도 종전의 펀드종류별 열거주의를 탈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부동산 분양권의 취득, 선박의 관리, 대선, 개량 등 종전 규정 이외의 방법까지 폭넓게 허용

# 자본시장법 1

2

##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

### 1. 종전의 기관별 규율체계의 문제점

- 종전의 자본시장 관련 법령체계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기관별 규율체계(Institutional Regulation)로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에서 각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를 열거하고 있었음

### 종전 자본시장 관련 법률상 금융투자업

법률	금융회사	영위 가능한 금융투자업
증권거래법	증권회사	매매업, 인수업, 매출업, 위탁매매업, 중개업, 대리업, 매매위탁의 중개·주선·대리업, 모집·매출의 주선업
선물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업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	중개업, 매매업, 인수업, 할인, 투자, 어음관리계좌업무
	자금증개회사	자금증개업
신탁업법	신탁회사	신탁업, 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자산운용업법	은행, 보험 등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투자자문사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사	투자일임업
	자산운용사	투자신탁·투자회사 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 기능
	수탁회사	투자신탁재산의 수탁업
	자산보관회사	투자회사의 자산보관업
부동산투자 회사(CR-REITs)법	자산관리회사	위탁관리REITs, CR-REITs 자산의 투자·운용
	자산보관기관	위탁관리REITs와 CR-REITs의 자산보관업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 자산의 운용
	자산보관회사	선박투자회사 자산의 보관
증기창업지원법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등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벤처육성특별법	창투사, 일반인 등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부품소재특별법	창투사, 상장법인 등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사업자, 투자자 등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의 운용
	자산관리자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금·자산의 보관·관리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06.12.28. 7면 >

# 자본시장법 1

2

##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

□ 각 법률은 규정된 금융업에 대해 독자적인 규제체계(진입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를 두고 있어 금융회사별로 서로 다른 규율이 적용되었음

○ 예를 들면, i ) 집합투자업이라는 동일한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등의 자산관리회사 등)의 인허가 요건이 서로 다르고, ii ) 자기자본규제비율 등 건전성 규제의 적용 여부도 다르며, iii )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의무 및 집합투자재산 분리·보관 의무 등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의 적용범위에도 차이가 나고, iv )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도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부동산투자회사), 해양수산부(선박운용회사), 산업자원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중소기업청(창투사) 등으로 분산

-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발생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공백이 있었음

→ 이와 같은 문제는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의 관계에서도 있었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의 위탁매매업무의 성격은 완전히 동일하며 단지 대상상품이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이라는 점만 다를 뿐인데도 법률적으로는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으로 분리되어 각각 규율되고 있었음

### 2. 자본시장법의 기능별 규율체계

□ 자본시장법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기능별 규율체계(Functional Regulation)로 전환

○ 이를 위해 먼저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고객(투자자)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여러 유형의 금융기능을 추출

- 그리고 각각의 금융기능에 대해서 진입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 업규제의 적용범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에 불문하고 하나의 금융기능과 한 세트의 적용규제를 대응시킴

- 이와 같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통해 금융회사간 규제적용의 형평을 기하게 됨

□ 자본시장법은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16개 법률)중 6개 법률을 통합하고 나머지 10개 법률은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규율법제가 없는 영역(비정형 간접투자, 파생금융상품)도 이 법의 규율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하여 규제의 공백을 제거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 자본시장법 1

2

##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

### 외국의 입법례

미국은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서 투자회사를 그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두고 매우 폭넓게 정의한 후 동법의 규제가 불필요한 투자회사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의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 FSMA)에서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 Scheme : CIS)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투자자의 이익 또는 수익에의 참여, 투자자가 펀드자산의 운용을 일상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투자자금이 집합되고 집합된 투자자금이 전체로서 운용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CIS)에 해당되어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의 규제를 받는 입법체계를 취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1

3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1.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종전의 법제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미비한 영역이 있었음
  - 이를 테면 증권회사가 파생상품의 매매·증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입 규제(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등), 건전성 규제(총위험액 제한 등), 영업행위규제(거래상대방 제한, 위험 설명의무 등) 등을 정하고 있었으나 은행,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영위하는 경우 기관별 규율체계하에서 「증권거래법」이 이를 규율하지 못하는 반면 「은행법」, 「보험업법」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정하고 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비하고 금융회사간 형평에도 문제가 있었음
  - 그러나, 기능별 규율체계로 개편된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금융회사를 불문하고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증개업에 관한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
-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의 도입 역시 투자자 보호 제도 공백의 해소에 기여함 즉, 자본시장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과거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자 보호 규제와 업규제의 적용범위를 '유가증권'(자본시장 법에서는 증권에 파생상품을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이라는 동일한 틀을 활용하고 있었음
  - 유가증권으로 열거된 증권이어야만 증권회사가 이를 취급할 수 있고 각종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것임
    - 반면, 유가증권으로 열거되지 않은 신종증권이 출현하였을 경우 증권회사는 이를 취급할 수 없지만 증권회사가 아닌 자는 이를 취급할 수 있음
    - 유가증권이 아닌 것을 매매·증개하는 것은 증권업이 아니기 때문임. 증권회사가 아닌 자가 이를 취급할 경우에도 별도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임
  -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증권이 출현하더라도 금융투자상품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이를 취급할 수 없으며 금융투자업자만이 각종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고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함

# 자본시장법 1

3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2. 체계적인 투자권유 규제 도입

-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등 매매의 체결을 권유하는 투자권유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①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고객파악의무(KYCR : Know-Your-Customer Rule)'를 도입(법 제46조)
  - ②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 특성을 적합하게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법 제46조)
  - ③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상품의 내용, 투자구조, 투자위험, 수수료 등 비용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를 도입(법 제47조)
  - 형식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하고, 투자자를 오도(misleading)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투자판단이나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설명에 허위나 누락이 없도록 의무화
    - 이에 따라 종전법령에 따라 선물·자산운용·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설명의무(투자자 문·투자일임·선박투자회사에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만 존재)가 증권회사, 신탁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되어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를 강화
  - ④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지 않고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펀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해당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적정성 원칙'도 도입
  - 이는 파생상품 등과 같은 고위험상품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없이 일반투자자가 자발적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후견자적 관점에서 일반투자자의 해당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파생상품 등의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충분한 정보 없이 고위험 투자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불측의 큰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⑤ 금융투자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누락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투자자의 원본 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투자자 보호의 수준을 높임(법 제48조)

# 자본시장법 1

3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⑥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요청하기 전에는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음
  - 또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투자권유 하는 것을 금지(Solicitation against will)하여 투자자가 존중되는 바람직한 투자권유 관행의 정착과 건전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기함(법 제49조)

### 3.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전면도입

- 종전의 「자산운용업법」을 통해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도입되어 있는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 제도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 적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함
  - 다만,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증권 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금융상품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투자권유시 자기명의나 계산에 따른 판매를 금지하고 투자권유대행인임을 고지하도록 함
  - 다만,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는 근본적으로 별도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투자증개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투자권유대행인은 법인 형태는 불허하고 개인에 대해서만 허용

### 4. 투자광고 규제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투자광고)를 할 수 있는 자를 금융투자업자, 협회, 금융지주회사, 증권의 발행인, 매출인으로 제한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자의 무분별한 광고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법 제57조)
-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수수료 등 투자자의 비용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광고에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57조제2항 및 제4항)
  - 특히,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간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볼 것을 권고, 집합투자증권의 손실 가능성,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반드시 포함하되,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종류·투자목적·운용전략, 집합투자업자·보관관리 신탁업자·판매업자 등 관계회사, 투자가 부담할 보수·수수료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내용의 광고에 따른 투자자의 혼동을 예방하고자 함(법 제57조제3항)

# 자본시장법 1

3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5. 이해상충 방지체계 도입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이나 제3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법령에서는 다층적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

#### (1)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 금융투자업자는 상시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도록 내부관리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을 마련하여야 함(법 제44조)

- 아울러, 내부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해상충을 파악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도록(disclosure)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낮춘 후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또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서비스(매매·그 밖의 거래) 제공을 금지함

#### (2) 정보교류 차단장치

□ 자본시장법은 나아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 간에는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를 의무화(법 제45조)

-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회사 내에서 상이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부서 간 적용되기도 하지만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에도 적용됨
  - 이해상충이 큰 부문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보교류 금지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공동 이용 등도 금지

#### (3)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별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큰 일부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음

- 예를 들면, i ) 투자매매업의 경우 투자자의 매수·매도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계산으로 매수·매도 하는 행위(선행매매), ii ) 투자증개업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행위, iii ) 집합투자·투자일임·자문·신탁업의 경우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자 재산의 매도·매수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자기계산으로 매도·매수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인가·등록의 취소, 벌칙 적용 등 엄중한 제재를 함

# 자본시장법 1

3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6.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 발행공시규제(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적용대상 증권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으로 확대하고, 발행주체가 국가에 준하는 채권(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 당연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사채 등),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 등에 한하여 발행공시규제의 적용을 면제함에 따라,
  - 은행채,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됨
    - 다만, 종전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제도는 동 증권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도로 일원화하여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함



## 정리하기

-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여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법령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여 금융회사가 즉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 관련 규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자본시장법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기능별 규율체계(Functional Regulation)로 전환하였다.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는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투자권유 전에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고객파악의무(Know-Your-Customer-Rule)와 적합성의 원칙은 위험감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한다.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일반투자자와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부적정할 경우 경고 등 조치를 의무화하는 적정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손해 발생 시 금융투자업자에게 손배해상책임을 부과하고 투자자의 원본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지닌다.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수수료 등 투자자의 비용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광고에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정리하기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이나 제3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령에서는 다층적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은 발행공시규제(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적용대상 증권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으로 확대하고 있다.

